교육민주화운동과 교육관련법

박거용

교육민주화운동과 교육관련법

모든 운동이 그렇듯이, 교육민주화운동도 교육관련법을 민주적으로 개정·제정하는 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민주화운동은 학교사회 민주화와 교육내용의 민주화 등을 실현하려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교육관계법의 개정이나 제정으로 정리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는 정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나친 통제, 그리고 사립학교의 비민주적 운영 때문에 갈수록 더욱 심화된다고 할 수 있다. 그간 전교조를 비롯한 교사단체들, 참교육학부모회를 비롯한 학부모단체들, 민 교협을 비롯한 교수단체들, 그리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교육문제는 더욱 어려워져 가고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의 고질적 병폐인 입시문제나 사교육비문제도 법으로 직접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교육민주화에 의해서 개혁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사립학교의 민주적 운영과 관련된 법, 대학교수의 재임용과

계약제·연봉제와 관계가 있는 법, 비정규 교원에 관한 법, 교수·직원·학생단체의 법적 위상, 국립대학운영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소위 사립학교청산법안 등의 현주소를 간략하게 살피고, 이 법들에 관한 전망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대학민주화의 걸림돌

1. 사립학교법: 사학 '지배구조' 관련법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사립학교는 전 근대적인 학교운영(족벌·세습 운영)으로 인해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 그 런데도 사립학교법에는 이런 고질병을 치료하는 조항이 하나도 없다는 문제 점을 가지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1963년 6월 26일 법률 제1362호로 제정되어 2003년 5월 현재까지 모두 34회에 걸쳐 개정됐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먼저 법인 이사회에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게 했으며, 이 가운데 1인은 학교법인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사장이 되도록 했다(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이렇게 구성된 학교법인은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학교법인이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학교법인이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사항 8) 기타 법령이나정관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제16조).

그리고 사립학교법은 이사회의 권한 가운데 총장 및 교원 임면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대학 총장은 학교법인이 임면하고, 총장을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2/3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했다(제53조). 이는 대학 총장이 법인의 의사에 맞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사회는 대학교원을 총장의 제청을 받아 임면하며(제53조의 2, 제1 항),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 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해 임용할 수 있다(제53조의 2, 제3항). 이에 따라 학교 운영의 거의 모든 부분에 법인 이사회가 사실상 관여할 수 있다. 하지 만 법인 운영을 감시할 감사를 이사회가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실질적인 감사 기능에 회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이처럼 사립대학 운영과 관련해 학교법인에 사실상 전권 (재정권, 인사권, 규칙제정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사립대학이 문제를 일으 켰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마련해 놓지 않았다. 물론 사립학교법 은 법인 이사들이 1) 이 법과 시행령을 위반하거나 2) 임원 간의 분쟁·회계 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해 당해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 게 한 때 3) 학사행정에 관해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했을 때에는 교 육인적자원부가 법인에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해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0조의 2). 하지만 사립학교법의 바로 다음 조항은 이들이 학교에서 물러나도 2년 만 지나면 다시 학교로 돌아 올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22조).

이와 같은 학교법인의 권한 집중을 개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도 1999년 국회는 사립학교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그나마 1998년 말에 교육 부가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 학교 운영의 민주화와 투명성 확보 및 학교 구성원 참여를 위해 1)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2) 사립학교 이사회에 공익이사가 1/3 이상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며 3) 대학의 학사운영을 심의하는 교무위원회에 평교수가 참 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참신한 수정안이었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1) 학교운영위원회를 선택적 자문기 구로 후퇴시켰고 2) 공익이사제 도입과 3) 교무위원회 조항을 완전히 삭제 했을 뿐만 아니라 4) 원안에도 없던 임시이시(관선이사) 임기 조항을 신설 해 비리 재단의 복귀마저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마다 사학비리가 끊이지 않아서, 구조화된 사학비리에 대한 법적, 제도적 방지책 마련이시급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는데, 국회가 나서서 이를 저지하고 사학의비리와 독점적 학교운영을 오히려 부추긴 것이다.

2. 교수재임용 및 계약·연봉제

교수채용에 관한 법은 교수재임용제와 2002년부터 실시된 계약·연봉제 관련법이다. 교수재임용제는 지난 1971년 박정희 정권이 자신에게 반대한 교수들을 제거할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1975년과 1976년 두 차례의 손질을 거쳐 1990년도에 지금의 틀이 갖춰졌다. 군사정권에서는 교수재임용제가 정치적으로 비판적인 교수들을 목자르는 도구로 합법적으로 사용됐다면, 1990년 이후부터는 주로 학내 민주화를 요구하는 교수들을 제거하는데 자의적으로 사용됐다. 5백여 명에 달하는 해직교수를 만들어낸 교수재임용제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일치 판정을 내림으로써 그 문제가 드러났고,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의해 개정될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나 교수재임용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제도인 계약제는 세계에서 그 유대를 찾아볼 수 없는 악법으로 교수의 신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국회는 1999년 교육부가 제출한 교사정년단축안, 전교조합법화안과 교수계약제관련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65개 상정 법안을 의결 정족수 1백51명이 채워지자 곧바로 법안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생략한 채, 표결 처리도 거치지않고 15분여 만에 통과시켰다. 교수의 신분과 대학교육의 질을 좌지우지할 교수계약제가 심의도 없이 몇 분만에 여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통과된 것이다. 이어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령'도 교수노조 등 교수단체의 반대를 무릅쓴 채 2001년 12월 31일 마침내 국무회의를 통과해 개악됐다. 이로써 교수계약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된 것이다.

교육부가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제안한 이유는 '대학교원 임용에 있어서

개방적 풍토를 조성하고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자질이 우수한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근무조건, 연봉 등을 포함하는 계약제는 교수 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능력 있는 교수에게는 그 능력에 맞는 대우를 하고, 무능력하고 연구 않는 교수는 대학에서 도태시켜, 무사 안일한 근무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즉'한 번 교수는 영원한 교수', '철밥통을 꿰어찬 교수', '요령 좋게 게으름 피우는 교수'의 사회에 계약제를 도입해 교수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논거이다. 더 나아가서 계약제의도입은 교수의 대학 간 이동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교육부 관계자의 강조점이다.

교수들은 이 제도를 찬성하지 않더라도 계약임용제 도입의 근본 취지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관성과 타성에 찌들은 대학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무언가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제도가 그 성 공적 도입의 선행조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채 시행될 때 닥쳐올 결과에 있다.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재단이 교수의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고, 교수협의회가 법정기구화(사립대학에는 교수협의회가 절반 정도 조직되어 있으나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반면, 국공립대학에는 교수협의회가 모두 조직되어 있으며, 총장을 견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수계약임용제는 학교예산 절감의 도구로 전략하거나 현행 재임용제도보다 훨씬 더 심하고 합법적인 교수 길들이기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는 계약제가 교수 노동력의 유연화 전술의 하나라는 점이다. 교육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교육에도 시장 의 논리를 들이대는 이 전술은 효율성 논리에 따라 모든 교수를 비정규직화 하고 그래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켜 우리 학문 발전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계약제로 인해서 노동강도는 전례 없이 강화되고 외형적 업적만이 강조될 것이며, 교수의 사회와 대학에 대한 비판정신은 그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교수계약제는 경제논리가 관철될 수 없는 교육분야에도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것이고, 탈상품적 속성이 가장 강한 교육을 상품화하는 것이다. 계약제임용이 정착된 미국에서조차 대학의 시간강사 비율이 1970년 22%, 1980년 34%에서 1990년대에 45%로 급증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계약제의폐해로 시간강사 강의 비율의 증가 이외에도 시간강사와 조교의 노동 착취, 그리고 저임금(연봉 1천만 원인 경우까지 있다) 전임교수의 증가와 강의 부담 증가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미국에서도 증대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단기간에 가시적 효과를 내려는데 급급한 정부는 16%라는지나치게 적은 고등교육 공공재원(OECD 평균 80%, 캐나다 90%, 독일 90.4%, 미국 48.4%, 일본 46.4% 등)을 무시하면서, 교육이라는 공공영역의 고유한 속성을 훼손하는 실수를 알면서도 저지르고 만 것이다. 따라서 교수단체들은 교수노조를 만들어 교수계약제 철폐를 위한 투쟁을 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3. 그림자 없는 비정규 교원

교수계약제가 전면 실시되고 있는 마당에 시간강사의 신분이나 대우가 나아질 리 없다. 대학강의의 절반 이상을 맡고 있는 시간강사는 고등교육법에서 여전히 교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기초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강사료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그림자 없는 투명인간이다.

2001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00년 1학기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 채용하고 있는 시간강사 연인원은 5만8천1백48명이다. 시간강사들이 대학에서 담당하는 강좌수를 보면, 교양의 경우 총 개설강좌의 절반이넘는 59.8%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공은 34.6%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강사들이 대학에서 담당하는 강의시간을 보면, 교양의 경우 총 강의시간의 절반이 넘는 57.3%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공은 29.9%를 담당

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 현재 사립대학의 강사료 지급 실태를 보면, 국립대학의 최저 기준인 2만3천 원 이상 지급하고 있는 대학은 전체 1백7개 조사대상 대학의 13.1%인 14곳에 불과하다. 이를 포함해 2만원에서 2만7천 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대학은 전체의 59.8%인 64개 대학이며, 2만원 이하의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는 대학은 2000년 현재 27.1%인 29개 대학이나 됐다. 특히 사립 전문대학의 경우 시간강사 강사료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 2000년 현재 사립전문대의 강사료 지급 실태를 분석한 결과, 1/3이 1만6천 원 이하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만 원 이상의 강사료를 지급하는 전문 대학은 4.7%인 5곳에 불과했다. 요약하자면, 대학 강의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면서도 대우는 여전히 열악한 비정규직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시간강사의 현실이다.

여기서 또 살펴보아야 할 집단이 이미 계약제 비정규직이 되어버린 비전 임교원(전임도 아니고 시간강사도 아닌)이다. 현재 법정교원확보율에 포함되는 교원은 전임교원(연금가입자, 의료보험 가입자이면서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로 당해 대학에서 전일제 근무를 하는 자), 겸임교원(교수자격기준에 해당하며 본직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고 임용기간이 1년 이상인 자) 그리고 2001년부터 새로 포함된 초빙교원(교수 자격기준에 해당하며, 임용기간이 1년 이상이고 보수를 정액으로 지급 받으며, 퇴직금 지급이 계약서나 고용조건에 명시된 자)이다. 이렇게 볼때 시간강사는 아니면서 전임교원에 포함되지 않는 집단이 정관의 단서규정이나 별도의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채용되어서 해당 대학의 전임교원과구분되는 비전임교원(연구·강의전담 교수로 임용된 자, 대우교수 등)이며, 17가지 명칭을 가진 이들은 이미 전임교원 수의 20%에 육박하고 있다.

비전임교원 채용은 시간강사 비율이 높다는 나쁜 인상을 지우면서 노동기 간의 유연화(6개월 학기제에서 1년 또는 2년 단위로), 노동임금의 유연화 (강사료와는 달리 방학 중에도 다소의 금액을 지급)를 실현하는 방법이 된 것이다. 교대와 사대 통·폐합과 관련된 초·중등 연계자격증제도가, 이를테면 프랑스어 교사에게 일어를 가르치게 하는 식으로 전공 외의 교과 강요를 통해 교원인력을 유연화하지만 전문성 약화와 노동강도의 심화를 가져와 결국 교육의 질을 저하시킨다면, 대학의 경우는 계약제를 통해 다수의 교수를 비정규직화해 교수인력을 유연화하려 하지만 그 결과는 교수직 회피현상으로 이어져 연구인력의 냉각화와 해외 학문에의 종속도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4. 교수·직원·학생단체의 법적 보호장치 부실

대학 구성 주체는 교수·학생·직원이다. 통상적인 대학의 목적이 교육·연구·사회봉사활동에 있다고 할 때 교수와 학생은 직접적인 당사자이고, 직원은 교수와 학생이 이런 활동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지원조직이다. 하지만 이들 세 주체는 법적인 공식 기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교수(협의)회와 학생회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학칙상의 임의기구로 설정되어 있을 뿐 그성격 및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다. 직원노조 역시 노동관련법에 의해 노동자 조직으로 인정받을 뿐 대학의 주체로서 법적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대학 구성원인 교수·학생·직원이 법적인 기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대학의 왜곡된 운영구조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정부와 사학운영자들은 이와 같은 법적 규정을 이용해 대학 구성원들을 운영 주체로 인정조차 해주지 않고 있으며, 이들이 학교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면 즉각적인 탄압을 벌이는 수단으로 이런 법적 미규정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

지난 1996년 교육부 주체로 개최된 '교육법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논의들이 진행됐다. 당시 고등교육법 시안은 '고등교육기

관의 구성원은 교직원과 등록한 학생으로 하고, 교직원은 총장 또는 학장, 저입갓사 이삿의 교원. 조교 및 직원으로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되. 모든 구성원 은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충실하게 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 께 '학생은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문연구 및 예술활동과 교육 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학생의 자치활동은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고 했다. 이 내용은 대학민주화를 요구하는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모두 닦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의 한계(특히 시간강사를 교직 워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도 많았지만 나름대로 진일보한 의견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 구성원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 기준과 학생들의 의무와 권리를 포함한 이 내용들은 최종 확정된 고등교육법에서 삭제되거나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변질되어 버렸다.

교수단체들은 교수협의회를 법정기구화하고 대학 운영과 관련한 심의· 의결기구화해줄 것을 수 년째 정부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모 르쇠로 일관하면서 일부 대학(경북대, 경상대, 영남대 등)에서 자체 시행하 려는 움직임마저 봉쇄하고 있다. 학생과 직원들 역시 학생회(학생회비를 별 도로 징수하도록 하는 경우, 학생회를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와 직원노조의 공식 기구화를 외치고 있지만 이들의 목소리가 언제 반영될지는 아무도 모 른다.

정부당국이 대학 구성원의 공식기구화 목소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정권 의 대학 통제를 지속시키고 사학운영자들의 기득권을 계속 보장하겠다는 뜻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부의 이런 행태는 '민주화 없이 학문 발전 없다' 는 주장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 노무현 정부에서 바뀌게 될지 는 아직도 미지수이다.

5. 국립대학 발전계획과 국립대학운영에 관한 특별법

전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교육발전5개년 계획(안)' 을 통해 우리나라 대학의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퇴행적인 운영구조 체제를 더욱 공고화시켰다.

전 김대중 정부는 우리나라 대학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대학 운영 구조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에는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대학의 영리기관화와 정부 주도의 인위적 대학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국립 대학발전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거부하는 처사를 보였다. 특히 이 계획은 우리나라 국·사립 대학의 역학 관계 때문에 사립대학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아도 제왕적 권력으로 전횡을 일삼고 있는 사학 운영자들에게 날개를 달 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립대학발전계획에 나타난 대학의 운영구조 개편과 관련한 부분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짚어보자. 이 발전계획은 대학의사결정구조의 개편을 위해 우선 책임운영기관화 추진(총장선출을 공모제로 하고 총장은 교육부장 관과 경영계약 체결)과 가칭 대학평의원회 설치(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지 않은 대학에 설치. 교수·직원대표 이외에 다양한 학외 인사들로 구성, 2 안은 국립대학 전체에 대학 평의원회의 도입을 의무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총장공모제로 인해 총장직선제는 폐지될 수밖에 없고, 총장후보선출위원회를 교육인적자원부내에 두게 되면서 대학에 대한 교육 인적자원부의 지배와 통제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책임운영기 관화 추진은 대학의 공공성을 포기한 대학의 영리기관화 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학 경영층, 교수·직원·학부모·동문회 대표, 교육부 장관이 추천하는 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지역사회 인사 등 다 양한 학내외 인사들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는 학생들을 배제함으로써 대 학 내에서의 대표성과 민주성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국립대학발전계획은 또한 대폭적인 등록금 인상(납입금을 대학의 장이 교직원, 학부모 및 관련 인사 등으로 구성된 대학재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불러올 특별회계까지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 방안은 결국 국립대 민영화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할 수 있다.

국립대학발전계획은 이외에도 교수업적평가제 개선, 교수연봉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교수도 엄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업적을 평가하는 대상으로 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일이다. 그러나 계약 임용제의 선행조건인 교수협의회의 법적 인정(공식기구화) 없이, 그리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안인 교수 확보율을 법정기준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방치한 채, 계약 임용제와 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은 대학교수 통제 계획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립대학발전계획과 그에 따른 국립대학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결과적으로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강화하되, 자신들의 지원 의무는 회피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배제된 채 기존에 학내·외에서 기득권을 행사해 왔던 인사들 주축으로 형식적 논의구조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정부가 통제하는 모습을 감춰보려는 얄팍한 수법에 지나지 않으며, 대학구성원들이 주체가된 진정한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 이런 계획은 또한 설립자 친·인척과 소위 말하는 사회적 명망가 중심으로 구성된 사학 법인의문제점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들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발상으로 시대 역행적이고 반교육적이라고 할 수 있다.

6. 전문대학발전방안과 사립학교청산법

교육인적자원부는 2001년 6월 전문대학 발전방안을 단 한번의 공청회나 설명회도 없이 확정안으로 발표했다. 이런 절차의 비민주성 자체가 교육인 적자원부가 전문대학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가를 드러내 준다. 어쨌건 이 방안은 '2002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졸업자 등의 입학지원이 급격히 줄어듦 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학교재정난과 전문대학교육의 질저하 현상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이 방안은 무분별한 정원증원을 억제하기 위해 현재 교사확보율 55%, 교원확보율 60%로 되어 있는 입학정원자율책정기준을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각각 100%로 상향조정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조건을 100% 만족시킬 대학은 없기 때문에 이는 정원동결을 말하는 것인데, 왜 4년제 대학에는 이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은 4년제와 2년제에 대한 차별적 태도에서 그 답변을 찾을 수밖에 없다. 또 이런 정원동결정책은 그간 교육인적자원부가 전문대학에 대한 장기적 전망 없이 대처해 왔음을 말해준다. 고교 졸업자 감소 추세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전문대학의 재무구조가취약(1999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보자면, 학교세입중 등록금 의존도는 전문대 68.4%, 일반대 61.8%이고, 학교세입 중 법인전입금 비율은 전문대 2.0%, 일반대 9.9%,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전문대 2백81만8천 원, 일반대 4백62만1천 원)하다는 사실, 그리고 전문대 졸업자의 임금수준이 대졸자보다고졸자에 가까운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다음으로 이 방안은 학생모집 대량 미달사태 등으로 인해 학교법인의 '해 산사유 발생시' 재산출연자에게 한시적으로 출연재산을 되돌려 줄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방안(4년제 대학과 보조를 맞추어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일명 사립학교 청산법으로 사립학교를 사유재산으로 파악해 사학 해산시 사회에 환원한 출연재산을 되돌려준다는 천민자본주의적 발상을 극 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립학교청산법은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업 무보고에서 사학의 퇴출 경로를 열어준다거나 대학 인수·합병을 가능케 한 다는 안으로 변형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교육단체들은 사학을 개인 재산으로 여기는 사립학교청산법 제정 반대 투쟁을 벌여야 할 것이다.

전망

지금까지 교육관계법을 대학에 주로 초점을 맞춰 간단히 살펴보았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우리나라 교육의 절을 높이고 학문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정부의 통제와 사립학교의 전근대적 학교운영을 타파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과제는 교육관계법의 민주적인 개정과 제정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다. 모든 법이 그렇듯이, 교육관계법도 인간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은 항상 다시 쓸 수밖에 없으며, 그 방향은 교육민주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희망한다.

좀 거칠게 요약해서 말하자면, 교육관련 단체들은 1) 사립학교의 족벌/세습적 운영을 타파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2) 대학교수의 채용방식인 계약제를 철폐하도록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며, 3) 시간강사와 조교의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며, 4) 교수와 직원과 학생단체를 법적기구로 인정하도록 개정하고, 5) 국립대학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철회하도록 하며, 6) 사립학교청산법안과 같은 천민자본주의적 발상을 뿌리뽑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학교와 교육의 민주화 없이 교육의 질과 학문의 성과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박거용 tryst@sangmyung.ac.kr | 상명대 영어교육과 교수, 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 협의회 공동의장 역임. 역서로 『러시아 형식주의』(2001)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 「김대중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비관」등이 있다.